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법무부 소관) 이 상 민

●법률 제19857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본다.

제2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보상이 청구된 사건과 이 법 시행 당시 형사보상청구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마998 등)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